

제안서

수신 :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02-741-5363) 평화와인권연대 최정민(017-311-4245)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는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 토론회에 귀 단체께서 주관단체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급적 빨리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회 기획안>

'양심 · 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공개토론회'

1. 취지와 목적

올 초에 각 지면과 공중과 방송을 통해서 여호와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소개되면서 한국 사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전과 집총거부에 대한 여호와증인들의 종교에의 신념은 3년 가까운 세월을 철창신세를 저야만 하는 세상의 형벌에도 아직도 굳건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에는 14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4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을 들고 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안타까운 사연은 최근 소개되기 이전에는 세상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싸움으로 묵묵히 이어져왔습니다.

지난해는 가까운 나라 대만에서 군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나 제도적인 면에서 많이 비미하지만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이고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의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1961년 군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현재 2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복무를 대신해 왔으며 독일연방군의 신병채용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대체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독일의 건설에 이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권리는 한국에 뒤늦게 소개되었지만 이미 UN과 선진국들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흔히 취급되듯이 군대를 갖은 방법으로 그저 '기피'하고자 하는 철부지 젊은이들의 일탈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대에 대한, 전쟁에 대한 또는 생명에 대한 자신의 양심적 신념에 의해 군대에 징집되길 거부하거나 집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특정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은 군사주의가 구조화되어 있고 분단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군대 혹은 징병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허락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그러합니다. 3월말에는 온라인 상에서 징병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던 웹사이트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침묵을 강

제안서

수신 :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02-741-5363) 평화와인권연대 최정민(017-311-4245)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징총을 거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는 5월 31일 양심, 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 토론회에 귀 단체께서 주관단체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급적 빨리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회 기획안>

'양심 · 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공개토론회'

1. 취지와 목적

올 초에 각 지면과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여호와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소개되면서 한국 사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전과 징총거부에 대한 여호와증인들의 종교에의 신념은 3년 가까운 세월을 철창신세를 저야만 하는 세상의 형벌에도 아직도 굳건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에는 14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4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을 들고 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안타까운 사연은 최근 소개되기 이전에는 세상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싸움으로 묵묵히 이어져왔습니다.

지난해는 가까운 나라 대만에서 군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나 제도적인 면에서 많이 비미하지만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이고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의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1961년 군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현재 2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복무를 대신해 왔으며 독일연방군의 신병채용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대체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독일의 건설에 이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권리는 한국에 뒤늦게 소개되었지만 이미 UN과 선진국들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흔히 취급되듯이 군대를 갖은 방법으로 그저 '기피'하고자 하는 철부지 젊은이들의 일탈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대에 대한, 전쟁에 대한 또는 생명에 대한 자신의 양심적 신념에 의해 군대에 징집되길 거부하거나 징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특정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은 군사주의가 구조화되어 있고 분단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군대 혹은 징병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허락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그러합니다. 3월말에는 온라인 상에서 징병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던 웹사이트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침묵을 강

요당하고 있는 현재적 상황이지만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 아직도 차마 충을 들 수 없는 여호와증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공개워크숍은 이러한 침묵에 균열을 내고 징병제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있는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널리 알려내며 대만, 독일 등 해외의 사례들을 통해 현재 한국의 상황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때와 장소

때 : 2001년 5월 31일 (목) 늦은 2시~6시

장소 : 연세대학교 강당 (섭외중)

3. 일정

사회 : 한홍구 교수님 (성공회 대학교)

2시~2시 30분 : 사회자 인사말과 소개

2시 30분~2시 50분 : 발제1 (UN 등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하여)

2시 50분~3시 10분 : 발제2 (대만, 독일 등 해외사례 소개)

3시 10분~3시 20분 : 휴식

3시 20분~3시 40분 : 발제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현재적 한국 상황 및 관련법규)

3시 40분~4시 30분 : 관련자 증언 (여호와증인/양심선언자/기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4시 30분~6시 : 자유토론

4. 발제와 발제자 / 관련자 증언

1) 발제1 : 섭외중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혹은 국제앰네스티의 규정
-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심의 및 결의
- 유엔 인권절차의 활용 방법

2) 발제2 : 조국 교수님 (동국대학교)

- 각 나라별 사례 소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도입된 경위, 법적인 규정과 대체복무자들의 활동내용)
- 제한적 병역거부 등 병역거부와 연관된 군사부문에 대한 다양한 거부의 사례 (무기, 탄약, 무기 보조장비의 제조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 거부, 군사 목적의 통신, 운송, 건축에 대한 참여 거부, 무기 장난감의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 거부, 군사 목적의 연구활동에 대한 거부,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군사분야와 관련된 자료 및 홍보물 부착 거부, 방위세 납부 거부 등)

3) 발제3 : 임종인 변호사님 (여호와증인 공동변호인단)

-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의미와 사례)
-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 평가
-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방향

3) 관련자 증언 (섭외중)

- 여호와증인(당사자/어머니/아버지 등)
- 제7일 안식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 양심선언자
- 전경해체투쟁을 했던 전해투

-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될 수 있으면 워크숍에 참석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협의.

5. 준비단체 (협의중)

- 주관단체(토론회 실무를 책임지는 단위)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회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인권연대 등
- 후원단체(토론회 홍보 등 조직을 함께 하는 단위)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변, 비공개워크숍 참가단체, 각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

7. 준비 계획

	협의	홍보	발제문
4월 30일~5월 13일	·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관련 증언자 협의 · 장소협의 · 주관, 후원단체 협의		1차 토론
5월 14일~5월 20일		온라인 홍보	1차 발제문 제출, 2차 토론
5월 21일~5월 27일		1차 보도자료 배포	3차 토론
5월 28일~5월 30일		2차 보도자료 배포	마지막 점검 및 발제문 완결
5월 31일	D-day		

- 주관단체별 분담금 : 2만원
- 온라인 홍보와 보도자료 배포는 각 신문사, 언론사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신문사 등에도 배포
- 신문에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협의.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지기룡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소수에 대한 관용, 빈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상과 신념에 있어서 다양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수가 소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6,7세기 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일찍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명마저 걸어야 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생애를 마칠 무렵까지 지동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출판하지 못하였고, 한 세기 후에 자신이 발명한 망원경을 통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직접 실험으로 증명한 갈릴레오는 1633년 종교재판에서 지구가 돈다는 이론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소수의 인권 문제이자 양심과 신앙의 문제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는 요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자유]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소수가 다수와 다른 양심,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등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서 처벌된다(병역법 제87, 88조) 이 경우 1년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양심상 이유로 징총을 거부하고 총기를 수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된다(군형법 44조) 이 경우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확정과 함께 민간인으로 전역된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91년 이후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한해 평균 약 400명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수행자의 수가 92년 220명 93년 277명 94년 233명 95년 437명 96년 355명 97년 403명 98년 474명 99년 513명 2000년 642명으로 90년대 초에 비하여 3배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15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있다.

우리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판례에 그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위반으로 그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초부

터 상관이 총을 두 번 주어 다 받기를 거절하면 경합범이라고 하여 최고형의 2분의 1을 더 늘려 3년형을 선고하였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군복을 지급할 때 총을 주고, 다음 날 훈련할 때 또다시 총을 주어 거절하면 두 번 거부로 간주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해괴한 법 적용이었다. 어차피 총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두 번 총을 준다고 한번은 받고, 한 번은 안 받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일부 군법무관이 군장성들의 투철한 군인정신-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총을 안 받느냐, 이런 나쁜 놈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에 영합하여 개발한 해괴한 법 적용이었다.

이를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였다. 1999년 9월 14일 선고한 92도1534 판례는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러 번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많은 군법무관들이 이는 너무 어색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자, 94년 아예 군형법 44조 항명죄의 최고 형량을 3년으로 높였다, 그뒤로 지금까지 계속 3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군 의무 복무기간은 2년6개월에서 2년2개월로 줄었는데, 집총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형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94년 항명죄의 최고형량을 3년형으로 늘린데 대한 입법취지에는 특정종교의 병역거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군형법등 형사법의 범정형을 올리면서 특정종교라는 그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취지만 봐도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형량을 높인 것이 위 입법취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이유

여호와증인은 1870년대 초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찰스테이즈 러셀 주도로 작은 성서연구그룹이 발족된 것을 태동으로 하여 현재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세계 230개국의 나라에 여호와증인의 신도가 있으며 그중 110개국에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신도수는 2000년 현재 6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미국에 100만명, 독일 16만명, 러시아 11만명, 일본에 22만명, 한국은 8만7천명의 신도수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각 지부산하에 지역으로 나뉘고 각 지역을 순회구로 구분하여 1순회구당 20개 회중이 있는데 각 회중에서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는 약 200명 정도 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십일조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의 목사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따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장로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비리가 있던 적이 전혀 없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교 정신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라”“살인하지 말라”(마태복음 5장 44절, 22장 52절, 출애굽기 20장 13절)등 성경의 여러 가르침에 따라 총칼을 들지 않고 나아가 군복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서도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교훈에 따라 원수를 사랑했고 살인행위를 극력 죄악시하면서 병역을 거부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서울대서양사학과 교재인 서양사개론에도 '로마는 처음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으나 교세가 확대됨에 따라 교인들이 황제예배를 거부하고 병역거부를 하므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되어 있고, 서기 295년 로마제국에서 살던 막시밀리아누스를 비롯한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여 순교를 택하였는데, 후세에 이르러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인의 참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타협을 보게 된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쟁이나 병역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와 성서의 가르침 및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성서적 가르침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성서적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이념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새기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역사

여호와의 증인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본을 따르고 있는데 역사가 브라이언 던은 [대학살에 대한 교회의 반응(1986년)]이라는 저서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나치와 화합하지 않았다. 나치가 이 종파에 반감을 품은 주원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정치적 중립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대로, 나치독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총통에게 손을 들고 [하일 히틀러 Heil Hitler!]라고 외쳐 경의를 표하는 것마저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였다.

여호와의 증인과 나치즘과는 충돌이 거의 불가피하였는데 이는 [하일 히틀러 Heil Hitler!]라고 외쳐 히틀러 만세를 외치는 것은 구원이 히틀러로 말미암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므로 히틀러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카이사르에게 숭배행위를 하는 일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로마 투기장에서 죽어간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나치 치하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를 이유로 약 1만명이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그 중 2500명 이상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치치하에서 여호와증인이 순교한 것은 나치치하의 유대인 학살이 민족적인 문제였던 것과는 달리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종교적 이유(여호와 증인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박해를 당한 것이다.

나치치하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어져서 학살되는등 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카톨릭과 다른 기독교인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히틀러를 환영하였는데 카톨릭역사가 E.I. 왓킨은 히틀러가 벌인 침략전쟁을 카톨릭에서 후원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헤어교수는 3200만명의 독일 카톨릭교인중(그중 1550만명은 남자인데) 단지 일곱사람만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하였다고 고증하고 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시초부터 명명백백한 교리적 반대입장을 천명하였고 그에 따른 고난을 감수하였다. 그들은 나치국가에 대한 여하한 협력도 거부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나치치하에서 황금시대와 위

의 사정은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입장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가주의적 기초에서 바라보도록 하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로 투옥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여호와 증인에 대한 시각에 오해의 골이 깊어졌으며 한국에서 여호와 증인들은 오랫동안 그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자식이 교도소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었으며 늙은 부모와 부양할 가족을 두고 실형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형제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일본 군국주의하에서도 병역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처른 혹독한 고통의 기록도 한반도의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사의 기록 뒤편에 가려워지고 있었다.

근자에 와서 기독교계는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고 있는데(중앙일보 1997년 11월23일호) 여호와 증인은 교단 전체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여 그로 인하여 투옥되고 목숨까지 잃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조류에 따른 한국에서의 대체복무 제도도입 기대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국가들은 모두 대체복사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주국가인 한국에서도 국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아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여호와 증인의 병역거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꼬나풀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민주국가에서도 징병제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을 받아왔으나 여호와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병역거부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성서상의 보편적인 진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여호와 증인들이 모든 나라에서 일관성있게 고수해온 보편적인 입장이다.

점차 많은 정부들이 여호와 증인의 종교적인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미국과 서구 남미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러시아와 동구의 여러나라들도 법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도 여호와 증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군사적인 대체복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녀 모두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호와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는 대체복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여호와 증인임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으면 입영을 1년씩 연기해서 일반군인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3년 동안 연기되면 자동면제되는 연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호와 증인들 입장도 절대다수의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 여호와 증인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여호와 증인들이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로서 군대에 가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7만여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들은 약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있으나 여호와 증

안지(현재의 파수대와 깨어라)를 통하여 나치의 만행을 폭로하고 1940년까지 20개 강제수용소의 이름을 밝히고 그곳에서의 가공할 실태를 보도하였다. 또한 병역거부 및 히틀러에 대한 만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슈타포는 독일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1만명(당시 독일에서의 여호와의 증인 숫자는 2만 5천명 정도로 추정)이 체포되어 2500명 이상 순교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대학살기념관에는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식별하게 해주던 보라색 삼각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컴퓨터 자료로 그 내용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 2차대전후 러시아에서도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발견되는 대로 시베리아에 강제노동수용소로 유배되었다.

한국에서의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

1912년 미국인 선교인 로버트 R.홀리스터가 내한하여 전도하기 시작한 이래 여호와의 증인들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당시 군국주의 노선에 있던 일본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오다가 1933년에는 여호와증인의 출판을 위해 설립한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일본식 표기 : 등대사) 발행의 종교서적이 내무성의 명령으로 종로경찰서와 평양경찰서에 의해 13종 5만부가 압수되기도 하였다. 이 압수수색은 당시 독일에서 나치에의 협력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에 대한 히틀러의 대대적인 탄압의 물결에 일본이 동맹국인 독일과 동일한 반응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대륙침략정책에 따라 천황을 신격화하고 그들의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선포하고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본내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천황의 신격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자 사태는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한국과 타이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의 증인에 대하여 남녀, 노약자를 불문하고 일대 검거선풍이 몰아닥쳤다.

일본 내무성 내부분서인 사상월보(1941년 1월호)와 특고월보(1939년 6월호)에 따르면 일본 115명, 한국 30명, 타이완 9명의 체포자명단이 게재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고등법원검사국 사상부 비밀문서인 사상회보 속간은 한국에서 총 33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증인은 한국인들에게 병역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신사참배거부를 이유로 한 불경죄와 치안유지법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것이었다.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 85면에는 “여호와를 유일절대신으로 하는 신관과 천황제와의 대결 그리고 신사참배의 거부가 소송기록의 하나의 초점이 된다. 등대사 멤버들이 피조물로서의 천조대신이나 천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천황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되어 있다. 일제치하에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모두 검거되어 탄압을 받았는데, 일본에서 체포된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들 중 몇 명은 순교하였으며, 그 가운데 2명의 여성은 옥사하기도 하였다.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와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태도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함없이 계속되었는데, 전쟁 위기감이 팽배하였던 한반도

인은 위와 같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 대신 대체복무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복무 중에서도 매우 힘든 3D업종에 속하는 복무를 3년이상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마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한 깨달음은 저희 공동 변호인단이 변호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인데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여러 신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사회가 아직 얼마나 많은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소수자들에 대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 노동자, 농민, 재야인사등 양심범을 변호사들은 변호하고, 민가협, 엠네스티등이 지원했는데, 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지원, 변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은 집총만을 거부하겠다는 것일 뿐 군복무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더욱 힘든 어떤 일이라도 군복무에 대체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양심적인 행동이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국민적 반성없이 처벌받아 왔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1945년 해방후 건국 이래 지금까지 10,000명이상이 징역형을 받고 형을 살았다. 지난 5. 15 용인에 있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건국후 처음으로 변호사(임종인, 김병주, 조광희, 김수정, 송기원)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여 여호와의 증인신자 18명의 의 집총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관심과 여론형성에 발맞추어 국회의원들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법제화를 위하여 금년 6월경 공청회를 준비하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많은 세월 동안 조용히 모든 고통을 참으며 징역형을 감수하고, 사회 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평화적 투쟁의 승리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

■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단

■ 보고자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1.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의 전개와 참관단의 구성
2. 타이완에서의 대체복무 제도의 추진과정
3.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현황
4. 대체복무 제도의 성과
5. 대체복무 제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6. 군 인권 문제와 대체복무제
7. 타이완의 민주화와 대체복무제
8. 한국에서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제언
9. 맺음말

1.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의 전개와 참관단의 구성

한국은 50년 간 징병제가 실시된 나라이다. 지난 50여년간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등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투옥되었고, 현재도 1,30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민간과 군대의 교도소에 갇혀 있다. 분단과 군사독재가 계속되어 온 한국사회에서 징병제는 성격으로 남아 있다.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각 방면에서 민주화를 이루어왔다. 그 성과는 아직 만족할만하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발현된 하나의 특징은 인권운동의 부각이다. 지난 시기 의문사, 고문, 불법체포, 폭력적 시위 진압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인권운동의 시각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져 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물론 지금도 술한 노동자와 학생들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우리나라에 1,3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전부 여호와의 증인으로 국가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우리 사회에서 이단자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뒤늦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1년 2월 7일 『한겨레 21』 345호가 「마이너리티」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보도한 이래 이 문제는 각 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군제대사에 대한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예비역들은 별때처럼 일어나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들을 공격했다. 이 문제는 최근의 부산대 여학생들의 웹진 '월장'이 학내의 예비역 복학생들의 행태를 비판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은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한국사회의 군사주의의 폭력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런 경험은 군대가 남성우월주의의 마초문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는 진원지라는 인식을 여성활동가들 속에 심화시켰다.

30년의 군사독재와 50년의 징병제를 겪은 병영국가 한국에서 군사주의와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놀라울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몇 편 안 되는 글도 박노자 교수와 같은 외국인학자나 권인숙 교수 같은 여성 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을 뿐, 정작 군대생활을 체험한 남성 학자나 활동가들은 이 문제에 침묵을 지켜왔다.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군사산점 논쟁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30일 『한겨레 21』 301호가 특집으로 「징병제를 흔들어라!」라는 기사를 다룬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 후 2001년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권인숙 씨가 페미니즘 시각에서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고, 3월 16-17일 이틀 간 파주에서 70여명의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모임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을 포함한 느슨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공동대책위가 조직되어 지난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가 종로성당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5월에는 임종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민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국선변호인이 아닌 민선변호인단에 의한 법률구조가 시작되었다. 또 6월 초에는 김삼석 씨가 『반갑다, 군대야!』라는 책을 발간하여 민족민주운동 입장에서 군대 문제를 파헤쳤다. 한편 경찰은 파주 회의가 있던 직후인 3월 20일 '군대반대·병역기피 사이트'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여 민간진영에서의 징병제 반대운동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타이완은 2000년 7월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의 활동가들의 큰 관심을 끌어 파주 회의에서는 타이완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의 입법위원(국회의원) 치엔시치에(簡錫楷) 씨를 초청하여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2001년 3월 22일 『한겨레 21』 351호는 타이완 현지취재를 통해 이 제도를 국내에 소개했다. 파주회의 참가자들은 우리와 같은 병영국가였던 타이완에서 이 제도가 실시된 데 대해 비상한 흥미를 갖었고, 치엔시치에 의원이 집행장으로 있는 타이완 추진화평문교기금회의 초청으로 7월 8일부터 일주일 간 타이완을 방문하여 이 제도의 실시현황을 직접 돌아보고, 정부관리, 입법위원, 시민운동가, 대체복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타이완 방문이 확정된 이후 3월의 파주 회의와 5월의 토론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참관단이 구성되었다. 참관단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이석태 변호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군경진사 순직자가족협의회 이애련 회장, 최영규 선생, 인터넷 신문 『대자보』의 이창은 발행인, 평화인권연대의 최정민, 홍창욱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운 차장,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 임치운 씨 등과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집행위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포함되었다.

참관단의 주요 일정을 소개하면 도착 다음날인 9일에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첸신민(陳新民) 교수와의 토론, 이 제도를 추진한 사람들의 방법론 교육, 10일에는 타이완 여호와의 증인 본부 방문, 이 제도의 담당 주무부서로 우리나라의 병무청 격인 내정부 역성사(內政部 役政司) 방문,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양로원과 정신지체자 학교 방문, 11일에는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소방서, 시각장애자 학교, 사회봉사센터 방문 및 내정부 부장 접견, 12일에는 의회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한 입법위원들과의 토론회, 사회복지단체 활동가들과의 토론회, 타이완에서 군대 내 의문사 등의 해결과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황마마(黃媽媽) 어머니 방문, 13일에는 기자회견, 황마마 어머니 등 군대 내 순직자, 폭력에 의한 피해자 가족 면담, 축진화평문교기금회 회원 및 타이완 대학생들과의 토론회 등이었다.

2. 타이완에서의 대체복무 제도의 추진과정

치엔시치에 의원은 1996년 2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당시에는 '사회역'이라 부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대학생들 역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타이완대학 학생회 등 주요 대학의 학생회를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치엔 의원은 학생회와도 접촉하기 힘들어 몇몇 동아리를 찾아다니며 동아리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치엔 의원 등이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자 병력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대답 없는 메아리와 같던 대체복무 제도 도입운동에 돌파구가 뚫린 것은 1997년 7월 국방부가 「국군정실방안(國軍精實方案)」을 채택하여 군 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부터였다. 한편 치엔 의원은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군복무기간의 단축을 추진했다. 군복무 기간의 단축 없이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다.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제기되자 젊은이들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98년 7월 치엔 의원은 「타이완의 희망의 복무 - 사회역」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이 제도의 장점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만화가이기도 한 치엔 의원은 이 소책자의 삽화를 직접 그렸다.

이런 활동과 병행하여 치엔 의원은 사회복지단체를 찾아다니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배치될 수 있어 사회복지의 질을 급속히 향상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처음에는 군인들이 와 봐야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시큰둥했다. 그러나 치엔 의원 등이 유럽국가의 예를 들면서 대체복무 제도의 장점을 끈질기게 설명함에 따라 사회복지단체들도 이 제도를 지지하게 되었고, 1998년 8월에는 20여 개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역민간추동연맹'이 결성되었다. 추동연맹은 1999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사회복지, 환경, 그리고 원주민복지 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널리 선전했다.

한편 감군안 실시 이후 병력 자원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행정원도 대체복무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3월 행정원 내에 전담반이 구성되었고, 8월에는 이 전담반의 핵심요원들이 치엔 의원, 국방부 고위관료 등과 함께 유럽을 방문하여 여러 나라의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 현황을 시찰하였다. 이들은 대체복무제도의 실시가 국가의 당면이익에 부합되며, 앞으로 1년 간 이 제도의 준비를 정부의 주요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론지었다.

1999년 5월에는 입법원 내에 「초당파 사회역 추진소조」가 결성되었는데, 225명의 입법위원 중 78명이 참가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각인 행정원장은 정부가 2000년 7월부터 사회역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입법원 내성위원회는 또 치엔 의원 등이 제안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내시 5개월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사회역의 복무 기간도 이에 상응하게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무렵 사회역 추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접속하여 이 제도를 알게 되고 지지의 폭을 넓혔다. 이런 여론의 지지와 병력을 줄이는 대신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군부가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방부도 태도를 바꾸어 사회역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1999년 9월 21일 타

이완 중부인 타이중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 발생한 이재민 구호와 복구건설의 긴박함은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에 힘을 보태주었다.

한국사회에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여호와의 증인 문제를 중심으로 촉발된 것에 비해 타이완에서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양심법에 관한 논의는 뒤늦게 1999년 10월에 제기되었다. 타이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 중인 사람은 당시 40여 명에 불과했다.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어 관계인사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는 인권존중과 병역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 한국과는 달리 타이완의 기독교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아무런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침내 2000년 1월 15일 입법원은 「병역법 수정안」과 「체대역(대체복무) 실시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제도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타이완에서는 2000년 3월 18일 총통선거가 실시되어 야당인 민진당의 쉐슈이피엔(陳水扁) 후보가 당선되어 50년이 넘는 국민당의 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 즉,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는 민진당 집권 이후이지만, 이미 국민당 통치 하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방침과 법적,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민진당의 집권이 이 제도의 정착과 확대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당과 군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할 일이다.

3.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현황

처음 치엔 의원과 민간단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추진할 때의 명칭은 사회역(社會役)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외교(해외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보안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역이 포함되어 전체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명칭도 체대역(替代役)으로 변화되었다.

1) 인원 및 역종: 현재 10,055명(종교이유 복무자 43명 제외)이 대체복무 중인데 이들을 역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역 5,395 (이 중 교정역이 1,760) / 소방역 1,062 / 사회역 367 / 환경보호역 391 / 의료역 242 / 교육복무역 2,036 / 건설역 272 / 사법행정역 163 / 토지측량역 62 / 외교역 35 / 경제안전역 30

2) 신체 등급, 훈련 및 복무 기한

신체등급은 현역, 체대역, 면제로 나뉘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체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으로 체대역을 뽑는다. 복무 기한은 현역은 1년 10개월이고 대체복무자 중에서 신체등급상 체대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한은 현역과 같지만 자원에 의해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개월이 긴 2년 2개월이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8주간의 역종별 훈련을 받는다. 종교적 이유로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주간의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년 9개월이다.

3) 신분 및 대우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이나 사병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체대역에는 계급은 없지만, 복무기간에 따라 현역처럼 봉급이 오른다. 처음에는 이등병 월급인 5,545 NT\$의 월급을 받고 6개월 후 일등병 수준, 18개월 이후 복무를 마칠 때까지는 상등병 수준인 6,595 NT\$를 받는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 NT\$가 약 40원이므로 복무연한에 따라 22만원에서 26만원의 월급을 지급 받는다. (즉, 이들의 한 달 급여가 우리나라 사병의 27개월 월급 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4. 대체복무 제도의 성과

1) 사회복지의 확대

타이완에서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비록 입법과정에서 경찰역, 소방역 등에 대체복무자들의 절반 가량이 배정되어 사회복지의 확대가 원래의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수천 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참관단이 방문한 기관 중에서 타이완 성 노인의 집의 경우 원장은 지난 몇 년 간 자신이 바라던 인력충원이 대체복무자 10명이 배정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했다. 독일의 경우 동서냉전의 종식과 통일로 인해 국방위협이 줄어들어 징병제 폐지의 여건이 성숙하였으나, 아직 징병제 폐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약 13만 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자들이 사회복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에서는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우 가정에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타이완이나 한국처럼 현역병들이 2년 이상 복무하는 반면 면제자들은 전혀 군대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현역과 면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만큼 크다. 이런 불공평성은 군복무자들에게 심각한 불평등의식과 박탈감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의 군가산점 논쟁은 바로 현역복무자들의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또한 현역과 면제 사이의 큰 차이는 기를 쓰고 현역복무를 회피하는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의 원인이 된다.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체대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병종(丙種)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되던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 사이의 불공평성을 현격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눈이 나빠 면제 판정을 받던 사람들 중 심각한 약시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크게 줄이게 된 것이다.

3)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 살릴 기회 제공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현역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4) 현역의 생활개선

대체복무 제도는 사회 뿐 아니라 군대에도 도움이 된다. 대체복무의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현역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역생활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에 보다 잘 적응해 나간다. 군 당국의 입장에서 자원해서 현역에 입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감소되어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다. 또 군당국으로서는 우수한 인력을 대체복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현역들의 근무 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참관단이 국방부나 군 관계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나 군 당국에서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바는 없다고 한다.

5)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될 당시 타이완에는 6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실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특사로 풀려나 복역기간에 따라 군복무 면제 또는 대체복무에 편입되었다.

6)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명예를 높이게 되었다.

5. 대체복무 제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형평성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이 제도가 돈 있고 뺑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빠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정사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치엔 의원, 첸신민 교수 등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제도적 보완에 의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복무 역종 내에서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었다. 경찰역, 교정역, 소방역 등의 근무조건은 다른 역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집단생활을 하므로 현역과 마찬가지로 내무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없고, 휴식시간이 부족하다. 20-30명 단위의 내무생활의 경우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증대하여 구타, 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 환경보호 업무 등은 업무 자체가 아주 힘이 들어서 기피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교정역, 소방역, 경찰역, 사회역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체복무 제도가 일이 고될 뿐 아니라 복무기간도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의견이 인터넷, 친구관계 등을 통해 퍼져 입대 대상자 사이에 대체복무 제도의 인기가 떨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대체복무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5천명 모집에 9천명이 지원하여 남는 인원은 추첨을 해야 했던 반면, 그 다음 모집에서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반면 교육역 중 학교 경비와 같은 역종은 근무 학교에 따라 할 일이 없는 등 아주 편하여 대체복무 내에서의 근무조건의 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현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부유층 자제들이 선호하는 직역이기도 하다. 현역과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역의 복무기한을 역종별로 다르게 잡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2) 소방역·교정역·경찰역 등의 문제

소방서에 대체근무자를 배치한다는 발상은 한국에서도 의무소방대 문제로 논란이 야기된 적이 있었다. 우리 참관단에는 군경순직자 유가족회의 어머니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은 국내에서 의무소방대에 징집된 청년을 배치하는 문제에 반대하신 분들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의무소방대 증설 문제가 홍제동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순직한 직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징집자들을 화재 진화 현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이석태 변호사, 유가족회의 이애련 회장과 최영금 선생 등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소방당국과 역정사 관계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이 화재진화의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고 소방차 관리, 수질 검사, 상황근무, 구출된 인원의 후송 등 보조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참관단의 평가회에서는 이런 법규정만으로는 미흡하고, 아예 대체복무자들의 화재현장 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교정역의 경우 우리 참관단이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었으나 교정역이 배치된 이후 교도소 당국이 일반 근무자의 인원을 감축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체복무에서 '대체'는 현역복무를 사회봉사 등 다른 일로 대체한다는 의미이지, 일반직원을 대체근무 요원으로 대체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체복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일반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들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 받은 각 기관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일반직원을 감원한다면, 이는 대체복무 제도의 참 뜻을 왜곡할 뿐 아니라 징집된 대체복무자들을 일반직 직업 공무원이 해야 할 위험하거나 힘든 일에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

3)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문제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고 한다. 또 사회복지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에는 현재 1300-1400 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00여 개 소 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 민간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사회봉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일들의 실상을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많다. 또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직전훈련(職前訓練)의 경우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로 교육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복지시설에 배정된 후에야 노인들의 기저귀를 가는 것, 그들의 말뚱무가 되고 짜증을 받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주어진 일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복무자들은 다른 곳으로의 전출을 원하기도 한다. 대체복무 제도에서 사회역이 확대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대체복무자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피부병,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6. 대체복무 제도와 군 인권 문제

매일 한두 명 씩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타이완의 군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와는 용쟁호투라 해야 할지, 용호상박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난형난제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군대 내의 의문사, 폭력, 구타, 욕설 등은 어디에 내 봐도 손색이 없다. 우리 군대는 일본군의 못된 버릇이 남아서 그렇다지만, 타이완 군대는 악명 높은 국부군의 후신이다. 그런 타이완의 군대에서 현재 놀라운 변화가 진행 중이다. 비록 군대 내의 인권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타이완 군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타이완에는 첸피에(陳碧娥)라는 군대 내의 인권문제 해결에 헌신하는 인권운동가가 있다. 이 분은 우리 참관단의 어머니들처럼 군대에 보낸 자식을 잃은 분이다. 그는 자기 본명보다는 아들의 성을 따서 후양마(黃媽媽), 즉 황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어느 어머니들처럼 후양마마 역시 평범한 어머니였다. 아들을 잃기 전까지는 성격으로 보아서 절대로 자살한 사람이 아니었던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군은 한국에서 늘 그러는 것처럼 자살이라고 통보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 후양마마는 발 벗고 나선 지 6년, 처음 국방부에 갔을 때 수갑을 차고 끌려나왔던 후양마마는 지금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방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병권익보장위원회의 자문위원이다. 후양마마가 국방부장에 의해 이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1999년 9월, 아직 민진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인 국민당 통치 시절의 일이다.

후양마마의 군중(軍中)인권축진회는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군중인권축진카드를 나눠준다. 이 카드에는 상관이나 고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되어 있다. 이 카드를 잃어버려도 걱정할 것이 없다. 후양마마의 전화번호는 타이완의 각 부대의 막사에 군현병대 등 폭행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군의 공식기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한다. 국방부에서는 아예 후양마마에게 이런 사건 처리를 위한 전용전화선을 설치해 주었다. 타이완에는 현재 군 복무 중 구타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100여명이다. 후양마마 등의 노력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을 위한 요양센터가 이미 건립되었고 내년 예산으로 한화 600억 원이 책정되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일선부대에서 후양마마 등은 큰 벽에 부딪힌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참관단으로 방문한 한국의 어머니들이 보기에는 낯익은 이야기이다. 타이완의 군대는 중국 본토에서 패주하여 타이완으로 쫓겨 온 국부군(國府軍)이다. 이들과 함께 온 이른바 외성인(外省人)들은 타이완 현지인인 본성인들에게는 짐벌자였다. 그리고 타이완군은 본토수복을 노리며 타이완 전체를 병참기지로 만들어 물적, 인적 자원을 쥐어짜다. 타이완 군대의 고위 지휘관들은 외성인인 반면, 하급장교, 하사관, 사병들은 본성인들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 즉 짐벌자들이 괴뢰명자들을 동원하여 군대를 만들었다는 사실

은 타이완 군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탄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점령자들이 본토수복의 허황된 꿈을 버리게 됨에 따라 타이완의 민주화는 가능해졌고, 군 인권문제 개선의 가능성도 보이게 되었다.

후앙마마는 뜻밖에도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즉 이 제도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현역 대신 편한 복무를 하게 하고 있을 뿐 군대 내의 인권 개선에 아직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앙마마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군 인권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이론적 기수 역할을 한 첸신민(陳新民) 교수는 대체복무가 확대된다면 군 입대 예정자들에게 현역과 대체복무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군대까지 안아도 된다는 선택권 주어졌을 때 현역으로 온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현역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되고, 군대도 통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구타 등 폭력의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타이완의 군 인권문제 개선에서 당당한 첫 발은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7. 한국에서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제언

1) 대체복무 제도 문제 세기의 원인에서 차이점

한국의 경우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논란의 초점이었다. 반면 타이완은 이 제도 도입에서 이론적 기수 역할을 한 첸신민 교수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증인 문제 때문에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 타이완의 경우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또 정치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타이완의 경우 현행 대체복무 제도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도 일반적인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인원이 초과될 경우 주점을 통해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역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타이완의 경우 이 제도가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적 실리 도모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나, 한국의 경우 올 해 초 한겨레 21』 보도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식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미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의 유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기총 등 보수적 기독교 단체의 반발 때문에 국회 공청회가 무산된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 문제로 촉발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막대한 반대 세력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타이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기독교 세력이 공히 약하고, 또 대체복무제도가 사회복지라는 큰 틀 속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진영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2) 감군 문제

병영 국가였던 타이완에서 정부 당국이 대체복무 제도를 수용한 것은 타이완이 60만에서 45만 이하로 감

군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경우 감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1)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2) 12억 인구의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인구 2천3백만의 타이완이 병력으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없으며, 3) 국방부와 군부 지도자들이 병력 수보다는 장비현대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4) 미국이 끊임없이 감군과 국방력 현대화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감군은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이 끼어들었으나, 앞으로의 추세는 남북 긴장완화에 따른 감군과 국방비 절감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이다. 또 군 내부, 특히 해군과 공군에는 군 병력 감축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병들의 봉급이 월 평균 1만원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력감축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가 타이완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 현재 매년 20만 이상의 청년들이 군대에 간다는 사실은 한국의 실업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경제관료들이 감군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3) 수혜자 층에 대한 여론의 전파와 흡입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 집단은 임용당사자인 청년학생들, 대체복무 인원을 배정 받음으로써 활동력과 봉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 환상단체 등이다. 타이완의 경험은 이들을 설득하고 조직화하여 이들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기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했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기본적인 추동력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타이완의 정치인들이 초당파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지원하고, 또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여론의 지원 속에서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와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 집권 보수세력의 태도

외형상 우리가 먼저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는 정권은 빼앗겼지만 사회의 체계모니는 놓치지 않은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불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타이완의 외성인들은 본토로 돌아갈 꿈이 깨지면서 이 곳에 뿌를 묻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고, 그 과정에서 본지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민주화가 투쟁으로 일관된 것이었다면, 타이완의 민주화에는 투쟁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옛 지배세력의 자기변신이 있었다. 타이완이 아시아에서 제일 민주화된 나라는 아닐지라도 제일 먼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라는 왕수예평(王水豫平) 의원의 지식에서 그 영광의 실반은 수구반동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직간접을 맞추려는 보수세력의 것이 아닐까? 민주화가 필연적인 것을 용인하고, 어떤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구 지배층의 실리적 태도는 이 제도가 국가적 합의와 촉박 속에서 시행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5)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한국사회의 유리한 기반

이상 위에서 지적한 요인들은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기에 유리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유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첫째, 현재는 타이완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이미 대체복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꼭 참여의 이

달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그 인원을 보면 (산입가능요원이 약 5만5천명, 선문연구요원이 약 1만5천명, 공역근무요원이 5만5천명, 공중보건의 1천여 명 등으로 거의 13만에 달하며, 여기에 의무경찰, 상단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체검사에서 면제자를 줄이고 대체복무 등급을 신설한다면 면제자의 상당 부분을 대체복무로 흡수할 수 있어 군복무의 형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현역 복무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병역비리를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

8. 맺음말

타이완을 다녀 온 참관단 성원들은 이번 타이완 방문이 대단히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참관단 성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지 못한 것을 반성하였다. 참관단 성원들은 우리가 참관하고 온 것을 시민단체 성원들과 공유하고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의 확산을 위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갖기로 하였다. 특히 이 보고회를 계기로 기존의 비공식적인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새로운 공대위의 구성을 위해서는 영향력과 규모가 큰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키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학생 단체들과 대학 학생회들과 공동사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단체 및 환경단체들을 향해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선전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 문제가 대체복무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시발점이 되었지만,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보편적인 인권과 사회복지의 확대 및 불평등을 받고 있는 현행 징병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많은 집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할 수 있는 집단은, 예컨대 군부와 국방부를 선출할 수 있는 주류의 개편이 절실히 요청된다. 대체복무 제도가 완벽한 제도일수는 없으나, 병역비리, 병역제도의 불공평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투옥, 그리고 낮은 사회복지 수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시작이며, 이 제도가 한국사회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또 남극을 비롯한 정부가 사회복지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군축의 계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진향적으로 사고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이재승 *

I. 서론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결의안 77호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병역거부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을 뿐 합당한 대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대체로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 모두 또는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진행중인 민간봉사제도의 도입론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잘 정비된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표1. 유럽에서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의 도입현황

유형	국가명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한 국가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군대, 병역의무 또는 징집이 실제로 없는 국가	아이슬랜드, 몰타,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서 민간봉사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	라트비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민간봉사를 도입한 국가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다비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첸, 우크라이나, 헝가리
병역거부권을 부정하지만 비무장대체복무 또는 민간봉사를 도입한 국가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알바니아, *벨라루시, 사이프러스, 터키

*알바니아와 벨라루시는 헌법에 병역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정하는 국가이다.

출전: 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 Daten und Fakten zur Entwicklung von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Jahrgang 2000, 15쪽 이하(이하 Daten und Fakten으로 인용).

II. 독일에서의 병역거부권의 역사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려는 시도는 청교도혁명기의 영국에서 수평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1) 양심적 반대자에 대한 비무장 대체복무의 인정은 1661년 매사추세츠 그리고 1673년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다. 1757년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퀘이커교도와 메노나이트파에게 군복무를 면제시키고, 민간봉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에 영국의 피트 내각은 병역대행인에 대한 비용대납을 조건으로 퀘이커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2) 이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발생과정에서 보면 종교적 신념과 깊이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이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퀘이커교도로 발전하였으며, 청교도혁명 당시에는 일부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불발로 끝났지만 수평파들의 헌법대강인 인민협정(An Agreement of People 1647) 제4조 제2항은 군복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중 누구에 대해서도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표자들이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2) 병역거부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Jürgen Schreiber, *Kriegsdienstverweigerung*, Bonn Uni. Dissertation, 1952;

연관되어 있었다.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입된 계기도 종교적 이유에서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메노나이트파에 대한 은전령(恩典令)」³⁾이 첫 번째 사례이다. 이 규정은 프로이센에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도입한 병역법(1814)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었다. 이후 1867년에 북독일연방에서 병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시민은 병역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1868년의 내각령은 다시 메노나이트파들에게 비전투원으로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였다. 일차세계대전의 패배 후에 성립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도 없었다. 반면에 1935년 병역법을 통해 개병제를 도입한 나치제국에서는 병역은 독일국민에 대한 신성한 직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종교집단, 즉 메노나이트파,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형제단, 알드교도, 나사렛파, 재림파, 침례교도에 대한 박해는 극단적인 양상을 띠었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군형법에 의하여 사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강제수용소와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재산도 몰수당하였다.⁴⁾

나치제국의 패망 이후에 새로운 민주적 법치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차원에서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였다.⁵⁾ 병역거부권은 당시 반전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전쟁방지의 법적 수단으로 이해되었다.⁶⁾ 이러한 평화주의 정신은 1949년에 제정된 서독의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제26조의 침략전쟁금지규정 속에 회미하게나마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기본법에 명시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냉전 구도하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후에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1954년에 뒤늦게 가입한 서독은 동구사회주의 블록에 대한 응벽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은 기본법제정시에 병역의무를 예정해 놓기는 하였지만 1956년 기본법 제7차개정법(제12조)을 통하여 이를 명문화하였고, 동시에 병역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1960년에는 대체복무의 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민간봉사법(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阿部知二, 「良心的兵役拒否の思想」, 岩波書店, 1975 참조.

3) 정식명칭은 Gnadenprivilegium für die Mennonitengemeinden im Königreich Preußen v. 25. 3. 1780. 메노나이트파는 네덜란드에서 시몬스 메노(Simmons Meno)가 주창한 신교의 일파이다.

4) 전시 및 비상동원에 관한 특별형사령(Verordnung über das Sonderstrafrecht im Kriege und bei besonderm Einsatz 1938) §5 ①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군사력 붕괴죄로 사형에 처한다.

1.(생략)/ 2.(생략)

3. 자상을 통해서, 사기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타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전부, 일부 또는 일시적으로 면하려고 시도하는 자

②심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③사형 또는 징역형 외에 재산은 몰수한다.

인용은 Wolfgang Steinlechner, *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 Vahl, 1990, 12쪽 이하.

5) 헤센주헌법(1946) 제69조 ①헤센주 시민은 평화, 자유, 국제이해증진에 헌신한다. 전쟁을 경멸한다. 전쟁을 준비할 의도에서 취해진 모든 행위는 위헌적이다.

헤센주 병역거부법(사민당초안 1948) 제1조: 공민은 군복무 또는 전쟁참여를 강요받지 않으며, 오히려 군복무와 전쟁참가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조: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바덴주헌법(1947) 제3조: 어느 누구도 병역의무를 강요받지 않는다. 바덴주의 시민은 군복무의 이행을 강요받지 않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병역거부법(1948): 어느 누구도 병역을 강요받지 않는다.

바이에른 병역거부자처벌금지법(1947) 제1조: 국민은 군복무 또는 전쟁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에게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베를린헌법(1950) 제21조 ② 누구나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유한다.

인용은 Albert Kröls, *Kriegsdienstverweigerung: Das unbequeme Grundrecht*, Europäische Verlaganstalt, 1983, 20쪽 이하.

6) Otto-Ernst Kempen, "Art. 4 Abs. 3", E. Denninger/H. Ridder/H. Simmon/E. Stein 역음, *Kommentar zum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Luchterhand, 1989, 난의번호 2; Albert Kröls, 앞의 책, 21쪽.

Kriegsdienstverweigerer)도 마련하였다. 동법의 위헌성문제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 병역의무뿐만 아니라 민간 대체복무도 헌법합치적이라고 선언하였다.⁷⁾ 의회는 1968년에 기본법의 17차개정(제12a조)을 통하여 종래 기본법 제12조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편제를 정리하였다.⁸⁾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한 병역법 제25조를 모태로 하여 198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법(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에 대한 법제를 완비하였다. 현재 병역거부와 민간봉사⁹⁾를 규율하는 법제는 앞서 말한 독일기본법 제4조, 제12조, 제12a조, 병역법, 병역거부법과 민간봉사법이다. 병역거부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병역거부권의 행사절차, 즉 병역거부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봉사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이행하게 될 민간봉사의 범위, 활동, 비용 등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III.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군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된다.¹⁰⁾ 기본법이 병역거부권을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다.¹¹⁾ 그러나 일반적인 병역의무와 대체복무가 기본법에 도입되고 병역법이 시행되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다음의 설명은 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간추린 것이다.

1. 양심적 결정

양심이란 관련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명령을 부과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또는 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인식이나 의식에 구속되는 사람만이 양심적 이유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의무로 체험하는 바, '선'과 '악'의 범주를 지향한, 윤리적으로 진지한 결정을 의미한다.¹²⁾ 그러나 법원은 양심의 내용적 기준에 대해서는 단념하고 소극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은 신과의 관계에서만, 신의 명령 하에서만 또는 특정한 세계관 안에서만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서유럽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하여 종교는 더 이상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¹³⁾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정한 종교집단

7) BVerfGE 12, 45~62쪽.

8) 기본법 제12a조(병역의무와 기타의무) ①만18세부터 남성은 군대, 국경수비대 또는 민간구조단체에서 근무할 의무를 진다.

②양심적인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

9) 민간봉사는 Zivildienst의 번역어이다. 종래에는 법전용어로 민간대체복무(ziviler Ersatzdienst) 또는 대체복무(Ersatzdienst)가 사용되었으나 1973년 민간봉사법의 개정을 통해 용어를 간단히 Zivildienst로 고쳤다. 기본법에서는 여전히 대체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대체복무나 민간봉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민간봉사의 초기단계에서는 비전투부문에서의 군복무만을 허용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군대바깥에서 군대와 관련없는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민간봉사라 할 수 있다. 병역거부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지적은 이대훈,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2001년 3월 17일, 53쪽 이하.

10)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의번호 1; Martin Morlok, "Artikel 4", Horst Dreier 엮음, Grundgesetz Kommentar, Bd. I, Mohr Siebeck, 1996, 난의번호 59.

11) BVerfGE 12, 45(53)쪽; 69, 1(22)쪽.

12) BVerfGE 12, 45쪽.

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점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교과의 신자라는 사실은 병역거부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¹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일정한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의 의미는 일상언어적으로 이해될 따름이며, 양심의 개념, 본질, 기원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이론과의 고차원적인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¹⁵⁾

양심적 결정의 내용적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의 주관적 양심만이 결정적이다. 객관적 척도에 입각하여 양심을 평준화하는 것은 양심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심적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법원은 양심적 결정을 어떤 의미에서이든 '오류에 찬 것', '바른 것'과 '그릇된 것'으로 분류하거나 평가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⁷⁾ 법원의 심사는 양심적 결정의 배후에 있는 양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까지는 확장될 수 없고, 고작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지한) 양심적 결정을 내렸는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는 것이다.¹⁸⁾

2. 전쟁의 절대적 거부

기본법에 포괄적으로 선언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구체화한 구병역법 제25조(현재 병역거부법 제1조)¹⁹⁾가 독일과 외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고 한정하자 동법률의 위헌논쟁이 촉발되었다.

판례에 의하면 인간생명의 말살에 대한 윤리적 거부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에서 무기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독일과 외국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거부는 절대적인 거부이어야 하지 상황에 따른 거부(situationsabhängige Verweigerung)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전쟁(석유를 놓고 싸우는 걸프전쟁, 동족간의 전쟁, 민병대와의 전쟁), 특정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핵전쟁), 특정국가와의 전쟁, 특정한 상황하에서의 전쟁(독재국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리적인 거부가 아니므로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판례에 의하면 방어전쟁의 정당성을 시인하거나 방어전쟁에의 참여의사를 지니면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²²⁾ 또한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정도의 의식, 예컨대 국가간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정도로는 양심적 결정으로 충분하지 않다.²³⁾ 독일군대를 독일이외의 지역에 투입할 가능성만으로 병역

13)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들은 병역거부사유를 종교에 한정하지만 서유럽국가들은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14) BVerwGE 75, 188쪽. 특정한 종파(여호와의 증인)의 신자자격은 종파의 입장과 일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한 징표일 수 있지만, 그 소속여부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단양심(Gruppengewissen)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 BVerfGE 12, 45(54)쪽. 근대철학사에서 양심의 본질에 대한 논의로는 Rainer Eckertz, *Die 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ünden aus Grenzproblem des Rechts: Zur Überwindung des Dezisionismus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Nomos, 1986, 46~54쪽.

16)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44.

17) BVerfGE 12, 56쪽; BVerwGE 70, 216쪽; 79, 27쪽.

18) BVerwGE 75, 188쪽; 79, 27쪽; Rainer Eckertz, 앞의 책, 55쪽 이하; Hans-Theo Brecht,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4. Aufl., C.H.Beck, 1999, 2쪽.

19) 구병역법 제25조 ①: 양심적 이유로 국가간의 온갖 무력행사에 참여를 거부하고, 그러한 연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연방군대 밖에서 민간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법 제1조: 양심적 이유로 국가간의 온갖 무력행사에 참여를 거부하고, 그러한 연유로 기본법 제4조 제3항 1문을 원용하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기본법 12a조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로서 연방군대 밖에서 민간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20) BVerfGE 12, 45쪽.

21) BVerfGE 12, 45(57)쪽; 48, 127쪽; 69, 1(23)쪽; BVerwGE 83, 358(371)쪽.

22) BVerwGE 49, 75; BVerwG, Beschl. v. 8. 11. 1994=NJW 1994, 603쪽.

거부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²⁴⁾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견해는 모든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한다.²⁵⁾ 이들은 상황에 따른 거부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만이 양심적 결정의 다층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구병역법 제25조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양심적 결정의 무계약성을 살인금지명령의 획일적 적용으로 오해한 나머지 오로지 '독단적 평화주의자'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는다.²⁷⁾ 양심적 결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본성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양심적 결정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상황의 구체적인 차이를 식별해냄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도야시키게 된다. 그리고 인간생명의 말살을 목표로 하는 전쟁과 병역이라는 심각한 문제영역에서는 그 차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일체의 폭력을 거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 경찰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사되는 폭력을 긍정하는 태도도 양심적 근거에 입각한 병역거부와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긴급상황의 경우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에게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세도 양심적 근거에 입각한 병역거부와 모순되지 않는다.²⁸⁾

3. 거부대상으로서 병역

독일에서 병역은 크릭스던스트(Kriegsdienst)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전쟁복무를 의미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전쟁복무는 병역에 포함된다. 한편 평화시의 군복무는 병역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적절하게 병역은 전쟁복무 뿐만 아니라 평화시의 군복무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⁹⁾ 그리고 기본법 제12a조 제2항도 전쟁복무와 평화시의 군복무를 동일하게 병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결사의 병역
복무 = 내세봉사

한편 기본법 제4조 제3항이나 병역거부법 제1조는 거부대상인 병역을 '무기를 휴대한 병역(Kriegsdienst mit der Waffe)'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명하복의 군대조직과 복잡한 현대무기체계의 특징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직접 살상행위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기술적 상태에 따라 살상을 야기하는 무기의 투입에 연결되어 있는 활동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 후방의 레이더부대에서의 복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대, 즉 후송부대나 위생부대가 있다. 이것들도 살상행위를 목표로 하는 군대조직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대에 근무하는 것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³⁰⁾ 실정법도 대체복무는 연방군대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병역을 군대조직과 연결시키고 있다(병역거부법 제1조). 그러므로 직접 총기를 휴대하는 병역은 거부하지만 여타의 군복무는 이행하겠다는 의사는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³¹⁾

23) BVerwGE 38, 359쪽.

24) BVerwG, Beschl. v. 8. 11. 1994=NJW 1994, 603쪽.

25) 위헌이라는 견해의 소개는 Otto-Ernst Kempen, 앞의 글, 주18 참조.

26) Rainer Eckertz, 앞의 책, 356쪽. 예를 들어 양심적 이유로 특정지역(부모의 모국)에 출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선과 악의 윤리적 범주를 지향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은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의번호 146.

27) Rainer Eckertz, 앞의 책, 361쪽.

28) BVerwGE 44, 313쪽; Hans-Theo Brecht, 앞의 책, 3쪽.

29) BVerfGE 12, 56쪽.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Roland Fritz, Kommentar zum 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 2. Aufl., Luchterhand, 1985, 29쪽 이하.

30)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의번호 141;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의번호 10.

31) BVerwGE 44, 313쪽; 49, 73쪽.

4. 민간봉사의 거부

독일의 실정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에게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아주 드물게 민간봉사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을 완전거부자(Totalverweigerer) 또는 이중거부자(Doppelverweigerer)라고 하는데, 법원은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과 병역거부법 제1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민간봉사의 거부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³²⁾ 그러나 완전거부의 문제는 확립된 판례와는 달리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제4조 제3항(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목적은 국가적인 봉사의무전체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의 효력에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의 자유의 효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또한 제4조 제1항(양심의 자유)과 제3항(양심적 병역거부권)에서 운위되는 양심이 내용상 동일한 것이고, 민간봉사를 거부하는 데에 제4조 제1항을 원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에게 민간봉사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법 제4조 제1항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³⁵⁾ 현재로서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만약 민간봉사마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간봉사법 제53조(무단이탈죄)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³⁶⁾

5. 민간봉사의 면제

민간봉사법은 민사봉사의 배제사유 및 면제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징역 1년 이상의 범죄 또는 평화교란죄, 내란죄 등으로 6월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고 중앙신분등록부(Zentralregister)에서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자격정지중인 자, 보안처분중인 자는 민간봉사에서 배제된다(민간봉사법 제9조 제1항). 나아가 개신교회의 성직자, 부제서품을 받은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여타 종교의 상근성직자³⁷⁾는 민간봉사로부터 면제된다(동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의 형제—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매—가 연방생활보호법(Bundesversorgungsgesetz) 제1조 내지 연방배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 제1조에 규정된 손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같은 이유로 사망한 경우—단, 사망한 부모의 측에서 그 자가 유일하게 생존하는 아들인 경우—, 병역거부자로서 인정된 자의 두 형제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의 병역 또는 민간봉사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민간봉

32) BVerfGE 19, 135쪽; 23, 127쪽; BVerwGE 24, 1쪽.

33)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의번호 26.

34) Ernst-Wolfgang Böckenförde,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VVDStRL 28(1970), 74면(주 142); 이에 반해 병역의무의 영역에서 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제4조 제1항(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4조 제1항이 대체복무의 거부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는 Herbert Bethge, "Gewissensfreiheit", Josef Isensee/Paul Kirchhof 엮음,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I(Freiheitsrechte), C.F.Müller, 1989, 난의번호 50.

35) BVerfGE 19, 135쪽; 23, 191(194)쪽.

36) 민간봉사법 제53조(무단이탈죄) ① 계속적으로 또는 비상상황에서 민간봉사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또는 민간봉사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무단으로 민간봉사를 유기하거나 민간봉사에 불참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③ 범죄자가 1개월 이내에 민간봉사에 복귀하거나 민간봉사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생략)

동조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Hans-Theo Brecht, 앞의 책, 206쪽 이하. 완전거부자는 통상 2월에서 8월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37) 상근성직자라 함은 교회의 조직, 관리, 지도를 주업무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부목사이자 전도설교자인 여회와의 증인이 성직자로서 주당 47시간의 활동을 했더라도 생계를 위하여 주당 25시간 노동을 한다면 주업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BVerfG, Beschl. v. 12.1.1987=NVwZ 1987, 676쪽. 힌두교의 목회자에게 민간봉사를 면제시킨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은 BVerwG, Ur. v. 20. 3.1987=NVwZ 1987, 698쪽.

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민간봉사에서 면제된다(동법 제10조 제2항).

6. 병역과 민간봉사의 관계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권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나 민간봉사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병역의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³⁸⁾ 기본법 제12a조 제2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병역의무는 일차적인 의무이고, 민간봉사는 양심에 입각한 병역거부라는 특수경우를 대비한 대체근무라는 점이 드러난다.³⁹⁾ 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추가적으로 일정한 양심적 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무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인이 단순히 민간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는 민간봉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⁴⁰⁾ 따라서 민간봉사는 보충적인 의무가 아니고 오히려 이질적인 의무라고 이해된다.⁴¹⁾ 그러나 오늘날 병역의무자의 3분의 1정도가 민간봉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에서는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다.

IV. 병역거부자인정절차

병역거부자인정절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로,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연방민간봉사청(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이 서면심사절차를 진행한다(병역거부법 제4조 제1항). 둘째로, 예비군, 군인, 입대에정자 또는 재신청인들에 대한 인정절차는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동법 제9조 제1항). 위원회에서 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절차로 결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연방민간봉사청과 병무청—산하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이 조직상으로 별도의 기관이라는 점이다. 연방민간봉사청의 상위기관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이며, 병무청의 상위기관은 국방부(BMVG)이다.⁴²⁾ 그리하여 연방민간봉사청은 순수민간인(병역미필자)의 신청을,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는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자의 신청을 관할한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못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병역거부법은 양기관의 협력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어쨌든 인정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은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하다.

1. 신청서류

아래 형식요건은 연방민간봉사청의 서면절차에서 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방민간봉사청은 완비된 신청에 대해서만 결정하기 때문이다(동법 제5조 제1항).

1) 신청서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은 접수창구역할을 하며 병역미필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연방민간봉사청에 이를 송부한다.⁴³⁾ 신청서에는 기본법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2문). 그러나 그 형식이

38) 병역거부자의 인정절차를 심사방식이 아니라 신고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실제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의회는 1977년 병역법개정을 통해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이를 서면으로 선언한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포기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른바 우편엽서 절차(Postkartenverfahren)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BVerfGE 48, 127쪽.

39)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52.

40) Herbert Bethge, 앞의 글, 난외번호 58.

41)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23.

42) 병무행정기관은 연방병무청, 병무청, 지방병무청의 순서로 편제되어 있다(병역법 제14조).

43) Hans-Theo Brecht, 앞의 책, 6쪽.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으면 족하다.44)

2) 이유서

양심적 결정의 동기에 대한 해명은 인격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이유서의 어휘선택, 제목, 형식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신청인은 당연히 양심적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어야 한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법률은 불변적인 인격체로서 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스스로 양심적 결정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순히 귀동냥한 것을 반복하거나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은 인격적 해명이 아니다. '상세한'이라는 표현도 사실 불확정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교육수준을 상세함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고 있다.45) 그래서 대입자격시험을 마친 사람에게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상세함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유서가 너무나 짧은 경우라면 상세한 이유서라고 할 수 없다. '상세한' 그리고 '인격적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문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표현이 법치국가적 명확성의 원칙이나 행정의 합법률성, 권력분립의 원리, 실효적인 권리보장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46)

양심적 결정은
문제!

★

개별신청인들의 동기는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인도적 근거들이 원용되기도 한다. 병역거부사유로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폭력체험,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 전쟁체험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 유태인강제수용소방문, 영화도 자주 원용된다.47)

3) 이력서

신청인은 상세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이력서는 시간적 공백없이 삶의 중요한 날들을 기록해야 한다. 이력서를 단순히 표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병역거부와 관련있는 사항들이 반드시 이력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원증명서

병역거부신청서는 관할시청에 신청한 신원조회서를 구비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신원조회서는 제출시점에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인정절차

1) 연방민간봉사청

병역미필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연방민간봉사청이 결정한다. 연방민간봉사청은 서면절차에서 신청서가 완비되고, 제시된 동기가 병역거부권의 근거로 합당하고, 신청인의 전체상황이나 연방청에 알려진 여타사실이 신청인의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을 병역거부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조 제1항 3호). 사실에 대한 기재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민간봉사청은 신청인에게 이를 보충하거나 입증할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청은 그 이상의 사실규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5조 제2항). 의문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방청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며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연방청은 신청서가 완비되지 못하고, 제시된 동기가 병역거부의 근거로 합당치 않고,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4주 이내에도 신청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동법 제6조 제1항).

2)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예비군, 군인, 입대예정자 또는 재신청자의 인정신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배석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9조

44) 지방병무청에 “나는 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자 합니다”는 확정문구가 인쇄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45) BVerfGE 69, 44쪽.

46) BVerfGE 69, 43쪽; Hans-Theo Brecht, 앞의 책, 6쪽.

47) Daten und Fakten, 7쪽.

제2항). 위원회는 병역거부결정이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에 입각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는 경우에는 병역거부자로 인정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1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위원회가 양심적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제출된 서류로부터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개인적 청문을 개최한다.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청문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3) 불복절차

연방민간봉사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동법 제17조), 이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동법 제19조).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병역거부사안심판소가 결정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3. 병역거부자인정실태

징집대상자중에서 병역거부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현재에는 전체병역의무자의 30%에 이른다(표2 참조).

표2. 병역거부자비율

출생년도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징집대상자	624,644	585,419	508,889	432,394	381,394	388,343
병역거부자	62,470	82,313	100,642	109,986	104,889	118,547
거부자비율	10.00%	14.06%	19.78%	25.44%	27.50%	30.53%

출전: Daten und Fakten, 9쪽

병역거부인정신청의 인정결정비율도 매우 높다. 연방민간봉사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4년부터 2000년 6월 사이에 총 1,588,283건의 인정신청에 대하여 1,390,359건의 인정결정이 내려졌다. 총신청건수에서 88.76%가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것이다. 1984년에는 34,359신청건수에서 23,929건의 인정결정이 이루어지고, 독일통일 이후에 신청은 급증하였다. 최근 1999년에는 155,929 신청건에 대하여 133,638건의 인정결정이 내려졌다. 연방민간봉사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병역거부자 인정비율은 90%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기각결정의 대부분은 형식요건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표3).

표3. 연방민간봉사청의 병역거부자인정현황

연도	1984		1996		1999		전체(1984-00)	
신청건수	34,359		146,594		155,529		1,588,283	
결정건수	27,508		139,745		154,104		1,566,410	
*인정(§5)	23,929	86.99%	125,970	90.14%	133,638	86.72%	1,390,359	88.76%
*기각(§6(1)문)	63	0.23%	257	0.18%	278	0.18%	2,705	0.17%
*기각(§6(2)문)	1,014	3.69%	7,617	5.45%	12,000	7.79%	84,161	5.37%
*이송(§7)	2	0.01%	515	0.37%	916	0.59%	8,707	0.56%
법외결여각하	1,171	4.26%	3,195	2.29%	5,422	3.52%	55,779	3.58%
관할위해이송/철회	1,329	4.83%	2,191	1.57%	1,850	1.20%	24,699	1.58%

* 조문표시(§)는 모두 병역거부법의 해당조문을 의미한다.

제6조제1항1문: 병역거부근거부적합

제6조제1항2문: 서류미비 및 기한해태

제7조: 기재사항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위원회로 이송/위원회심사)
출전: Daten und Fakten, 12쪽

예비군, 군인 또는 입대예정자의 신청과 연방민간봉사청이 이송한 신청에 대해서는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가 인정절차를 개시한다. 그리고 연방민간봉사청,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동심판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절차에서도 80%이상의 신청자가 인정결정을 받는다(표4).

표4.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및 동심판소, 행정법원의 결정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총결정수	20,236		11,867		9,654		9,651		10,619	
인정결정수	17,841	88.16%	9,814	82.70%	7,873	81.55%	7,716	79.62%	8,752	81.42%
기각결정수	2,395	11.84%	2,053	17.30%	1,781	18.45%	1,975	20.38%	1,867	17.58%

출전: Daten und Fakten, 14쪽

V. 민간봉사제

1. 민간봉사영역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민간봉사법 제1조는 “민간봉사에 있어서 인정된 병역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익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적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 및 원조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⁴⁸⁾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민간봉사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표5 참조).

민간봉사자는 인정받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 또는 민간봉사단체에서 민간봉사를 이행한다(민간봉사법 제3조). 민간봉사자고용기관(Dienststelle)은 국가의 공공행정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민간봉사법 제4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시립병원, 대학병원, 환경보호소)이나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가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은 자신의 기관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영조물도 민간봉사자고용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세법상의 공익성 내지 공익법인으로서 성격이 중요하다. 나아가 민간봉사의 대체수단으로 민방위와 재난구호활동(동법 제14조 제4항), 개발봉사(동법 제14a조 제3항), 해외평화봉사(동법 제14b조)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민간봉사보다 장기간의 봉사를 요한다.

민간봉사가 병역거부자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강제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드물지만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민간봉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봉사법은 완전거부자를 위하여 1969년에 ‘자발적 근로제’를 도입하여 스스로 적절한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자발적 근로기간은 민간봉사보다 1년 이상 장기간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⁹⁾ 이 규정의 도입목적은 여호와의 증인의 민간봉사거부사태를 규율하려는 것이었으

48) Hans-Theo Brecht, 앞의 책, 56쪽.

49) 민간봉사법 제15a조(자발적인 근로제) ①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었음에도 양심적 이유로 민간봉사의 이행도 거부하는 자는 병원이나 기타 치료, 보호, 요양 시설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겠다고 확인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근로관계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민간봉사에 소집되지 않는다.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후 그리고 만24세에 이르기 전에 그가 이행해야 할 민간봉사보다 최소한 1년 이상 긴 기간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고자 하거나 이미 그러한 근로관계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1문이 적용된다.

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⁵⁰⁾

또한 민간봉사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90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나 민간봉사일자리(Zivildienstplätze)의 숫자도 항상 민간봉사자의 숫자를 상회하고 있다. 90년 들어와 매년 15만 명 정도의 민간봉사자가 있었고, 18만 개 정도의 민간봉사자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⁵¹⁾ 그리고 민간봉사자의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각지에 민간봉사학교(Zivildienstschule)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5. 민간봉사자활동실태

활동유형	1985년		1993년		1999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간호보조업무	40,356	58.4%	80,329	48.5%	107,374	67.4%
수공업	8,426	12.2%	22,454	13.6%	23,343	12.5%
농업	1,381	2.0%	4,579	2.8%	4,111	2.2%
실업/관리업	2,317	3.4%	1,156	0.7%	2,180	1.2%
생활보조업무	3,219	4.7%	8,149	4.9%	9,239	4.9%
환경보조	931	1.3%	5,050	3.0%	6,116	3.3%
운송	2,212	3.2%	3,363	2.0%	2,625	1.4%
권자수상/구조활동	7,547	10.9%	11,407	6.9%	9,978	5.3%
이동사회활동	0	0.0%	20,061	12.1%	13,337	7.1%
장애일보호	2,677	3.9%	8,301	5.0%	7,166	3.8%
장애아동보호	0	0.0%	889	0.5%	1,531	0.8%
스포츠영역	0	0.0%	58	0.0%	223	0.1%
전체	69,066명	100.0%	165,696명	100.0%	187,223명	100.0%

출전: Daten und Fakten, 25쪽

2. 민간봉사기간

기본법은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12a조 제2항 2문).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기간은 10개월이며, 민간봉사기간은 11개월이다. 2002년부터 군복무기간은 9개월로, 민간봉사기간은 10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군복무는 제대 후에도 소집가능성이 있으나 민간봉사는 일회적 근무로 소집이 면제되므로 1개월 정도 긴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간봉사와 군복무의 부담을 비교하여 입법자가 민간봉사기간을 장기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²⁾ 민간봉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장기이다. 독일처럼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경우도 있으나 2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⁵³⁾

3. 민간봉사비용

민간봉사법 제35조 제1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민간봉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봉사자에 대한 급료, 비용, 비품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지출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1) 민간봉사자의 비용지급실태

②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만 27세 이전에 제1항에 언급된 최소기간 동안에 그러한 근로관계에 이미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민간봉사의무는 소멸한다.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의 귀책사유없이 그러한 근로관계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부여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간봉사로 산입한다.

50) Hans-Theo Brecht, 앞의 책, 121쪽.

51) Daten und Fakten, 19쪽.

52) BVerfGE 69, 28쪽 이하; Herbert Bethge, 앞의 글, 난의번호 61.

53) 유럽에서 군복무기간과 민간봉사기간이 동일한 국가는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첸 등이다.

민간봉사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수당,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은 병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봉사자보다 실제 지급받는 액수는 작다.⁵⁴⁾

①급료

1단계 급료(1-3개월차): 일당 14.50DM 월합계 435DM
2단계 급료(4-6개월차): 일당 16.00DM 월합계 480DM
3단계 급료(7개월차 이상): 일당 17.50DM 월합계 525DM

②식비

일당 11.70DM 월합계 351DM

③피복비(자신의 피복을 이용하는 경우)

일당 2.30DM 월합계 69DM

④원격지수당(거주지에서 근무처까지의 거리에 비례)

31~50km 일당 1.00DM 월합계 30DM
50~100km 일당 3.00DM 월합계 90DM
101km이상 일당 6.00DM 월합계 180DM

⑤특별수당과 퇴직금

성탄절수당 375DM(12월 15)

퇴직금 1,500DM(제대일)

⑥교통비(근무처와 거주지 사이)/임대료 별도지급/기타 공무상여비지급

2)비용환급

민간봉사는 군복무와는 달리 압도적으로 사적으로 조직된 시설들에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국가에 대한 특수한 봉사이다. 그러므로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민간봉사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연방민간봉사청으로부터 환급받는다(동법 제4조).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민간봉사자의 투입을 통해 발생한 지출중에서 1일기준 12,23DM을 한도로 총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중에서 1,050DM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급료, 특별수당, 공무상 숙박비 및 여비 등은 전액 환급받는다.⁵⁵⁾

VI.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어 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가혹함에 대한 집단적 반성이 이제 공명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인간의 확신이나 양심의 내용이 보편화 가능한 것이라면 그에 입각한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최소한 형벌이 득달같이 덤비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겨져야 한다. 병역거부의 문제야말로 양심과 국가이성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사례일 것이다. 법과 민주적 다수결원칙의 효력은 양심 앞에서 한계에 직면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세상과 한계가 없다고 태연자약해하는 세상이 있을 뿐이다. 한계를 느끼는 나라는 그것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 나라는 이를 간단히 교도소에서 처리한다. 사실 한계영역은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영역이다. 세상의 모든 한계영역을 거부하는 조직이나 국가는 거대한 사고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히틀러 제국은 아마 그 전형적인 경우일 것이다. 50여 년 간의 우리 법치국가 역시 이러한 한계영역을 들락거리며 그 모든 권력을 심정테러 위에서 수립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깨끗이 부인할 수 있을까. 자유의 나라였다면 법정에서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면 30년이라도 감옥에 있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어찌 있을까. 병역거부는 평화주의적 확신에 입각한 것으로 스스로 의문에

54)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Hans-Theo Brecht, 앞의 책, 173쪽 이하.

55) 민간봉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장관의 지침 참조.

싸이지 않고서는 그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영구평화를 보장하는 국가연합이나 세계국가가 등장하지 않는 한에서는 국가이성의 견지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는 곳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판이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분단상황, 전쟁체험, 쓰라리거나 화려한 군경력, 마지막으로 애국심이 처절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영국은 1차세계대전의 와중에 병역거부법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의무로서 공동체를 강화시킬 의무가 거론된다. 물론 공동체를 국가공동체로 한정해야 하는지 세계공동체로까지 확장해야 하는지는 제쳐두더라도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심정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다른 목소리를 사그리 무시하고 똑같은 행위를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조치일까? 이제 확일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단계를 졸업할 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특정한 종파와 관련해서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 경우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애국심이나 신의 본성을 두고 교파간의 내공겨루기나 진리는쟁의 무대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기 위해 적개심과 교도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되살려 놓을 때가 다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표제어: 병역의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병역거부, 민간봉사

어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편지

'저에게는 진정 꿈이 있습니다'

오태양

2001년 12월 17일 오후 1시까지 논산훈련소로의 입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는 올해 27살의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젊은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청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제 삶에서 더 이상은 유예시킬 수 없는 중착역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글을 씁니다.

17일 입영일 아침에 저는 논산행 버스가 아닌 안국동행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훈련소에서 군복과 총을 지급 받고 훈련을 하는 대신, 서울의 어느 복지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거나 노숙자 분들의 시중을 들며 저에게 다가 올 삶의 시련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 전부터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따라 군사훈련 대신 사회봉사로서 국가와 이웃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하고 싶었고, 그것을 제 삶에서 직접 실천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행동은 명백히 현행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범죄자로서 처벌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꺼이 저는 양심적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면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어서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양심의 울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이웃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내면의 진실을 좇아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할 수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과도 부합될 수 있다는 제 나름의 믿음에 기초한 선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들을 두고 세상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혹은 '병역 기피자' 라고 일컫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담긴 개인의 진실, 혹은 사회적 진실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또한 그 길을 가야할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확히 159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범죄자로 취급되어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의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1595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저는 17일부로 1595번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등록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20대의 혈기왕성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정 이래 60여 년 동안 이 땅에는 무려 1만여 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재판자료에는 이들의 양심적 행위가 '단일한 죄목으로, 단 한 차례의 감형이나 사면복권 조치가 없었던 극악한 범죄'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그 범죄의 붉은 사선이 재판기록과 주민등록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만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기록과 그들의 가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겠으나, 어떤 이는 어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20여년이 넘게 소중한 키워왔던 인생의 꽃망울을 마음껏 터트려야 할 시기에, 사회적 편견과 침묵의 감옥에서 고통스러워 하거나 혹은 죽어갔던 그들에게 청춘의 삶이란, 사회의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 2월, 그들의 존재와 인생에 지워진 멍에를 발견하고서 저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란 과연 무엇일까?' '양심을 저울질하는 사회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 끝에 나에게 돌아온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실존적 고민과 스물 일곱 내 인생에 대한 통절한 성찰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타협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이 삶의 화두를 두고 끝없이 방황하며 몸부림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뭇 오래된 일이지만 올 2월 20일, 그 끝간데 없이 뜨거웠던 오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면하는 문제로서 '군입대'는 자기 인생을 기획함에 있어 매우 본질적인 문제일 듯 싶었습니다. 3대 독자로서 어릴 적부터 '남자라면 자진지원해서라도 군대는 다녀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저에게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병역 거부를 결심한 이유

94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특혜가 사라지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군대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배움과 인생설계를 해야 할 20대 초반에 2년이 넘는 군생활은 적지 않은 부담과 인생의 단절과도 같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저런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스물 일곱 나이가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착점에 이르러 3년간 산업기능요원을 할 생각으로 병역특례 국가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한창 준비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인터넷 토론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토론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생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전쟁과 군사훈련을 거부함으로써, 항명죄로 구속되어 3년의 감옥생활을 한다는 여호와의 증인의 이야기는 내 존재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아픔이 자욱이 베어 나오는 눈물 어린 수기들을 읽어 내려가며, 저의 가슴과 눈에서는 쉽없는 통한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살인하지 않겠다'는 개인의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보다 훨씬 부당하고 가혹한 3년의 감옥생활을 기꺼이 감수함은 물론이거니와 출소 후에도 범죄자와 종교적 이단자라는 멍에를 지고 편견과 소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의 기구한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돕는 차원 이전에, 내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온전히 전해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나 봅니다. 그것이 내 존재와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자, 공부든 물론이거니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그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4년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대학초년 시절부터 이 사회에서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제 힘 닿는 데까지 봉사하며 살고픈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들어가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농촌 봉사활동과 공부방(야학) 활동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이 세상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는 꿈

을 키워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아마도 저의 유년시절의 경험에서 영향받은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가정은 아버지의 알콜중독 증세로 인해 폭력과 이별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굶지는 않았지만 근근이 연명할 정도로 가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좌절이 아닌 삶의 원동력의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1학년 때부터 산동네 빈민지원활동이나 농촌봉사 활동 등을 자원해서 하곤 했습니다. 물론 학과 공부는 다소 소홀해졌지만,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봉사활동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역거부 대신 사회봉사 하고 싶다

그러던 차에 1997년 봄 무렵,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여 어린이는 물론이거니와 어른들까지도 폐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서 국민적인 지원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꿈꾸며 서울교대에 입학했던 저에게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어린 시절을 겪었으며,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에 내가 가르칠 수도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당장 먹을게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죽어간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뜻 있는 친구들과 힘을 모아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사회구호단체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동안 맛보지 못했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진정한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지만, 결국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힘들고 괴로운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돕고 구제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에게도 인생의 참된 보람과 행복감을 가슴 절절이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들자 한끼 밥 먹을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했고, 지구상에서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시작했던 '금요일 점심끓기'가 5년이 지난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불교를 접하게 된 건 그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그간 봉사활동을 하며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있었는데 '왜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왜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문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었던 것이 바로 한 인간으로서 평생을 '자비의 이타행'을 실천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이었으며, 불교적 가르침이었습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말라' '세상 만물은 연관되어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봉사하는 삶이 곧 자신의 행복이고, 자신을 닦는 것이 세상의 이로움으로 나아간다'는 불교적 세계관과 그런 삶을 몸소 실천해 보여 주신 부처님의 삶은 저에게 인생의 비전과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닦고 싶었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사회활동을 해 오며 추구하여 왔던 '전쟁과 가난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나의 소망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으

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쩌면 그 형식을 뛰어 넘는 보편적인 진리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즉시 저는 삼보에 귀의하고, 얼마 후 오계를 수계함으로써 진실한 불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전쟁과 가난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일에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노라'는 소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계수계를 받던 날, '불살생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살생하지 말라 함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기에 폭력, 살인, 고문, 사형, 전쟁, 공해, 핵무기 등을 반대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애호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으로 그 가르침에 견주면 부족함이 많아 부끄러웠지만, 그 지향함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 왔습니다. 나름대로 매일 5시에 일어나 기도와 명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자 하였고, 채식하는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했으며,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대생활을 통해 이러한 삶의 방식이 쉽사리 허용될 수 있을지 종종 의문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불살생'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 봉사의 인생관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어느덧 제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지침이 되었고, 그것은 봉사하는 삶,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던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해주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늘 상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총칼을 들고 있는 부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듯 '불살생'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대한 확신의 이유로 도저히 군사훈련과 징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체의 전쟁행위에 대한 반대이며, 그런 확신에 따른 일체의 군사훈련 참여에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사회구성원으로써 수많은 이들의 도움과 헌신적 노력 속에 이렇게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헌신적 노고가 더욱 '신성한 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역을 이행하는 행위가 진실로 신성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적 결단 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병역의 의무가 단지 '군사훈련의 필수적 이수'와 전투분야에의 복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오지의 초등학교에서 무보수의 교직생활을 한다던가,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보살피는 봉사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교대를 졸업한 저는 교원의 부족으로 폐교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의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교사로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어느 추운 겨울 행려병자로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직장가정에서 버림받고 길 위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노숙자분들을 도와 삶의 희망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간과 보수는 저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역 군생활의 기간과 보수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행정관계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소신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살생(不殺生) 및 생명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따른 양심적 결단으로서, 군사훈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 제도하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저는 평화를 사랑하

고 인권을 옹호하는 국민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21세기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고, 외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양심적 결단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21세기 최초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님 개인의 영광을 넘어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태 대한민국에는 1만여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범죄자로 취급되었고, 현재 전국 교도소에는 1600여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옹호에 대한 양심적 소신이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소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한편에서는 양심을 지킨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고, 한편에서는 양심을 지킨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세계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인의 모범이 된 인권과 평화의 대통령님께, 자신의 양심적 결단에 의해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1천 6백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제도적 구제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땅의 종교인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은 '살생하지 말며(불살생), 살생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도 보관하지 말라(불축살생구계)'고 우리에게 이릅니다. 종교적 가르침이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가르침이 현대의 종교인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한번쯤 돌이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일체의 군사훈련과 징총명령을 거부하여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1천 6백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이 땅의 종교인들이 나서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지와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하는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구제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다름 아닌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가 아닐런지요.

한편 진리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일부의 성직자들이 '군생활'을 통해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고 환속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교인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1천 6백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종교인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종교계 내에서도 성직자의 군입대에 관련한 논의가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조인 여러분께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법조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표된 이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단일한 죄목으로, 감형이나 사면복권 조치가 전무했던' 극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지구상의 법치국가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인해 1만여 명이 넘는 범죄자가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양심상의 이유로 수형생활을 했다는 이야기 또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흡사 봉건시대의 연좌제를 연상시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하고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진정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러한 '획일적인 조치'들이 조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정의의 법전과 평등의 저울이 진리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올바른 법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방부 관계자들께 호소합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불리우는 저는 20대의 가장 열기왕성한 시기에 국가안보와 국민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군생활을 겪어냈던 60만 현역 장병들의 삶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는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현재 범죄자자라는 명예를 지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1천 6백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또한 그러한 심정일 것이라 감히 추측해 봅니다.

제가 지금껏 군 입대를 미루고 편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헌신적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역 장병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나름의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있듯이, 개인의 신념에 의해 군사훈련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이들의 선택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런 선택의 댓가로는 너무나도 가혹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매년 15만여명의 군입대자 중 절반에 달하는 7만여명 정도가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체능특기자, 해외봉사협력요원, 어학병 등으로 군선택의 기회가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소위 '한국적 대체복무'라 명명하는 비전투적 병역근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민간대체복무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단지 '4주간의 군사훈련의 이행여부'에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국방부에서 우려하는 민간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방력 약화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런지요?.

매년 6백 여 명이 넘는 20대의 젊은이들이 4주간의 군사훈련을 피할 수 없어 징역 3년을 언도 받고 있습니다. 280만 군사대국 중국과 대치중인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 과감한 '군현대화 조치와 국가인력의 재분배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고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이익추구와 개인의 인권보장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사회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1석 3조의 지혜로운 조치라고 사려됩니다. 국가발전과 국민보호의 차원에서 병역의무 개념의 탄력적 사고와 민간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인권신장과 평화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의 제 사회시민단체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그동안 언론매체와 몇몇 헌신적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60년 침묵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햇살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80년대 민주화와 인권신장의 눈부신 역사를 간직해 온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에 비한다면, 그 이름도 채 파악되지 않는 1만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사려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유독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이단종파' 내지 '광신도 집단'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사회적 편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저는 한 종교인이자 인권을 옹호하는 이 땅의 한 시민으로서, 1천 6백여명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들의 고통과 인권에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유엔에서 결의되었던 바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고, 이미 세계적인 평화인권운동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네바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세계적 평화인권단체들이 정보교류와 국제네트워크 건설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2002년 3월에 개최될 유엔인권위원회의 주요한 의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채택되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산되고, 인간안보라는 신안보 패러다임이 활발히 논의되는 추세입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민간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세계적 평화인권 실현의 물결에 동참하는 것이자, 20세기 국가안보를 넘어 21세기 인간안보의 시대를 앞당기는 세계 NGO들의 공동의 관심사이자 국제연대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한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관심과 지지, 참여와 연대의 손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야흐로 21세기 평화와 인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일련의 전쟁상황은 우리에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폭력이 악순환 되는 사태'속에서 끝없이 희생되어 가는 저 먼나라 아프가니스탄의 난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아, 질병과 추위 속에서 절망하는 그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아침식사를 거르고, 평소 한끼 식사비용인 1천원을 난민지원금으로 모금한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평화와 인권의 시대, 이 목마른 외침

저는 매일 아침을 굶으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저당잡혀야 하는 아프간의 아이들을 가슴에 새깁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의 늪에서 헤메이다 지쳐 쓰러져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노를 분노로서, 미움을 미움으로서, 폭력을 또 다시 폭력으로서 대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고통받는 아이들의 절규가 언젠가는 무서운 분노의 화산으로 폭발하여 지구를 덮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감히 인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전쟁과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군사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서약은 제 삶에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에, 그것을 지키고자 할 경우에 저에게 돌아올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합니다. 다만 작고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한번도 만난 적 없는 159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들과의 정신적 교감을 통해 이야기하고픈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개인적 구제'를 넘어 과거의 1만여 병역거부 피해자들과 현재 1천 6백여 병역거부 수감자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양심의 결단으로 고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그리하여

저에게는 진정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꿈을 향해 걸어갈 것 입니다.

지구상에 전쟁과 가난의 고통이 사라지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총 든 군인이 아닌 자원봉사자로서 만나

인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지구의 생명과 평화에 대해

웃으며 어깨동무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말입니다.'